



▶ **Contract Administration**

발주처와 감독관의 계약상 책임과 의무

▶ **Contract Date**

“계약일”로 이해되고 있으나, 정확하게는 계약서 중 Agreement에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날을 말한다. 그러므로, Agreement Date 또는 Date of Agreement 라고도 한다.

▶ **Contract Line**

공사현장의 외곽경계선을 뜻하며 Perimeter Line 이라고도 한다.

▶ **Contractor's Affidavit**

시공자의 부채나 클레임, 또는 기타 저당권으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기 위해 시공자가 제공하는 서약서. 이와 유사한 용어로 noncollusion affidavit는 입찰자의 부정입찰(예 : 타인과의 담합)을 방지하기 위한 서약서이다.

▶ **Contractor's Estimate**

- ① 확정입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건설비용 (Construction Cost)에 대한 시공자의 예측
- ② 시공자의 기성신청 : Request for Interim(progress) Payment, Application for Interim(progress) Payment

▶ **Contractor's Option**

계약금액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자가 그의 재량으로 특정 자재나 공법 또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조항

▶ **Contract Time**

계약기간(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) : Completion Time

▶ **Contracting Officer(CO)**

미국 표준계약서 Standard Form 23A상의 계약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계약상 “감독관+감리자”의 역할을 수행한다. 영국 관급공사 계약서에는 Super-intending Officer(SO)로 불리우고 있으나, 역할은 CO와 동일하다.

▶ **Cost-Plus-Fee Agreement**

건설계약의 한 형태이며, 총액계약(Lump Sum)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계약시 계약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실제 공사비(직접비와 간접비, 시공자의 보수)를 정산하는 방식이다.

실제 공사비 중 시공자의 보수(Service Fee)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Cost-Plus-Fee Agreement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.

① Cost-Plus-Percentage of Cost

시공자의 보수는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. 이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공자의 보수도 증가한다.

② Cost-Plus-Fixed Fee

시공자의 보수는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다.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시공자의 보수는 고정되어 있다.

③ Cost-Plus-Sliding Fee

공사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때, 이 유형은 실익이 있으며 공사비가 초기예산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비례하여 시공자의 보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. 즉, 기본보수+변동보수 체계이다.

▶ **Custom-Built**

현장제작이란 뜻으로 유사개념으로는 In-Site와 In-Place가 있다.

▶ **Customs Clearance**

통관, 세관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customs(복수형)를 쓴다.(Customs Duties : 관세)

▶ **Cut**

이 용어는 상용영어가 아니더라도 토목현장에서 접하게 될 기회가 많아 설명한다.

① 굴삭된 자재(Excavated Material)

② 굴삭후 생긴 공간(The Void Resulting From The Excavation of Material)

③ 표면을 소정의 구배까지 굴삭해야 하는 깊이(The Depth) ◉